

의안번호	2210015
의 퇴 인	박상웅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8.
추 계 번호	25F246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
세액감면 규정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3조의4 신설 (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2028.12.31.까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- 적용대상: ①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3년(중소기업 2년)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한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공업지역으로 이전하여 ② 이전 전으로 소급하여 2년(중소기업 1년)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- 적용기한: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
2	안 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안 제63조의 4 신설 규정을 제2항 중복 배제대상에 추가
3	안 제127조(중복지원의 배제)	○ 안 제63조의 4 신설 규정을 제4항 중복 배제대상에 추가
4	안 제128조(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)	○ 안 제63조의 4 신설 규정을 제2항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 배제대상에 추가
5	안 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	○ 안 제63조의 4 신설 규정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추가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3조의4 신설 (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
3	안 제127조(중복지원의 배제)	
4	안 제128조(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)	
5	안 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수 등의 감소가 예상됨
 - 개정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3년(중소기업 2년)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한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7년간 100%, 그 이후 3년간 50% 감면하고,
 -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3년 이내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, 공업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,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등에는 감면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
 -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【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】를 준용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이월하여 과세
 -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 기업이 소유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의 공장용지 등 규정을 적용하나, 사업을 개시한 후 폐업한 경우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등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 및 업종별 기업 수 및 과세대상 소득 규모,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현황 자료가 필요하나,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업 지역이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으로서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

- 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¹⁾ 및 「항만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제외함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²⁾에 따라 2024년 2/2분기 기준 도시지역 139,474개사 관리지역 71,719개사, 농림지역 3,171개사, 자연환경보전지역 280개사 공장으로 등록함
 - 공장 소유 형태는 자가 136,548개사(63.4%), 임대 78,713개사(36.6%)
 - 공장 설립 형태는 일반 119,985개사(55.7%), 공장설립계획³⁾ 12,720개사(5.9%), 국가산단 34,430개사(16.0%), 일반·첨단산단 37,912개사(17.6%), 농공단지 8,732개사(4.1%), 자유무역 399개사(0.2%), 도시첨단 870개사(0.4%), 외국인 투자 213개사(0.1%)

[표 1] 광역시·도별 용도지역에 따른 공장등록 현황

(단위: 개사)

	도시지역	관리지역	농림지역	자연환경보전지역	기타	합계
서울특별시	11,319	2	0	0	23	11,344
부산광역시	11,090	59	0	5	9	11,163
대구광역시	8,606	194	11	0	5	8,816
인천광역시	13,714	175	25	8	10	13,932
광주광역시	4,717	38	3	0	23	4,781
대전광역시	3,915	62	3	0	6	3,986
울산광역시	2,932	191	39	4	9	3,175
세종특별자치시	326	525	13	0	8	872
경기도	42,819	33,197	1,071	30	254	77,371
강원특별자치도	2,351	1,774	88	6	8	4,227
충청북도	3,747	6,042	238	5	59	10,091
충청남도	3,850	7,854	406	4	58	12,172
전북특별자치도	4,596	3,029	200	9	13	7,847
전라남도	4,212	3,350	383	110	24	8,079
경상북도	8,562	7,122	467	25	51	16,227
경상남도	12,332	7,729	223	74	55	20,413
제주특별자치도	386	376	1	0	2	765
합계	139,474	71,719	3,171	280	617	215,261

자료: 한국산업단지공단, 「공장등록현황」, 2024년 2/2분기 기준

- 1)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【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】은 산업단지, 문화산업단지, 경제자유무역, 기업도시개발구역, 연구개발특구,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, 전원개발사업구역, 새만금사업지역, 항만배후단지,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함
- 2) 용도지역은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, 도시지역은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으로,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계획관리지역 어느 하나로 구분된다.
- 3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3조 【창업기업 육성 시설·지역의 지원 등】에 따라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로 대학·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·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말함
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 규모별 기업 수 등 자료가 필요하고,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,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본 개정안은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(박상웅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10014)의 의결을 전제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
 - (법인세 등)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 규모별 기업 수를 공장 설립 형태 및 업종별로 구분하여,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등을 제외하고 도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 수, 업종별 개별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
 - (종합부동산세 등)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 기업의 공장 설립 형태별 부동산 취득 원인과 보유 현황과 토지 및 건축물 가액 등 자료가 필요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수인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수인	02-6788-4839	suin2025@assembly.go.kr